



시설 및 설비 공동활용 규칙

규정번호	6-3-12
제정일자	2007.02.14
개정일자	2012.04.30
개정번호	Ver .2 총페이지 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및 동 산학협력단 소유의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(이하 “기기”라 한다)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수칙) 기기를 활용하고자하는 산업체 및 연구소, 기타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는 본 협력단의 [별첨 1]기기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한다.
2. 이용자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기기의 파손에 대하여서는 이용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.
3. 기기 사용에 필요한 재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
4. 기기의 사용 시간은 09:00부터 17:00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본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제3조(이용절차) 기기의 이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서 접수
2. 기술 검토 및 예약 확인
3. 기술분석 및 기기 사용료 협의
4. 기기 사용 승인 및 기기사용
5. 사용료 납부

제4조(사용료) 기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.

1. 정부 출연금으로 기기 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보조기관의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의한다.
2. 기기 사용료는 정부 출연기관의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의한다.
3. 제1호, 제2호에 의하지 아니 할 경우 협력단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방식을 따른다.
4. 사용료는 협력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
5. 사용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요할 시는 협력단장의 명의로 발급한다.

제5조(사용료의 집행) 기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사용 할 수 있다.

1. 대학의 시설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
2. 학생 장학금 및 교직원 인센티브
3. 협력단 운영비

제6조(기타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기기 사용 신청서

	계	팀장	부단장	단장
결재			전결	

일 자	년 월 일 ()요일 ~ 월 일 ()요일 (일간)		
사용목적			
사용 기기	기기 명 : 건물 이름과 방 번호 또는 기기가 있는 장소 :		
이용자 소속 산업체		산업체 주 소	
산업체 연락처		대표자 성명	
사용료	기기 명		금액
비 고			

상기와 같이 귀 대학 기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 주 소 :
 주민등록번호 :
 연 락 처 :

동양미래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